

2012. 8. 20. 의결, 2012. 9. 1. 시행

2020. 1. 6. 수정, 2020. 2. 1. 시행

2021. 12. 6. 수정, 2022. 3. 1. 시행

20 선거범죄 양형기준

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은 매수 및 이해유도(공직선거법 제230조, 다만 제5항은 제외),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(공직선거법 제231조),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(공직선거법 제232조, 다만 제3항은 제외),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(공직선거법 제233조), 방송·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(공직선거법 제235조), 허위사실공표(공직선거법 제250조), 후보자비방(공직선거법 제251조), 허위논평·보도 등 금지위반(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, 제96조 제2항),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행위(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, 제96조 제1항), 선거운동기간위반(공직선거법 제254조), 부정선거운동(공직선거법 제255조, 다만 제4항, 제5항은 제외),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(공직선거법 제257조, 다만 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과 제3항은 제외)의 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※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경우도 적용한다.

※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(수정)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,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

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01¹ 매수 및 이해유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당내경선 관련 매수	- 8월, 50만 원 - 500만 원	4월 - 1년	8월 - 2년
2	일반 매수,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	- 10월, 100만 원 - 1,500만 원	6월 - 1년4월	10월 - 2년6월
3	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	4월 - 1년, 150만 원 - 2,000만 원	8월 - 2년	1년 - 3년
4	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, 후보자 매수	6월 - 1년4월, 500만 원 - 2,500만 원	10월 - 2년6월	2년 - 4년
5	당선인에 대한 매수	8월 - 1년6월	1년 - 3년	2년6월 - 5년

- ▷ 일반인의 방송·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(제235조 제1항)는 2유형에,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·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(제235조 제2항)는 3유형에 포섭
- ▷ 제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, 그 행위의 지시·권유·요구·알선죄(제230조 제6항)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3배 가중
- ▷ 제2유형 중 일반인의 방송·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·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·권유·요구·약속죄(제235조 제1항)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/3로 감경
- ▷ 제3유형 중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·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(제235조 제2항)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/2로 감경

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●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●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●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● 의사표시·약속·승낙에 그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● 지시·권유·요구·알선의 경우 ● 계획적·조직적 범행 ●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아자 ●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종 전과(벌금형 포함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소극 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●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●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,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진지한 반성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● 자진 사퇴, 불출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이중 누범

선거범죄

2022.
3. 1.
수정시행

02¹ 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

유형	감경	기본	가중
기부행위	50만 원 - 300만 원	- 10월, 100만 원 - 500만 원	8월 - 2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·의례적 행위 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●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●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● 의사표시·약속에 그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●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● 계획적·조직적 범행 ● 후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·비속, 선거관계인의 범행 ●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아자 ●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종 전과(벌금형 포함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소극 가담 ●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(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) ●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
	행위자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진지한 반성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● 자진 사퇴, 불출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이중 누범



03¹ 허위사실공표 · 후보자비방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후보자비방	50만 원 - 150만 원	- 8월, 100만 원 - 300만 원	6월 - 1년, 250만 원 - 400만 원
2	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	70만 원 - 300만 원	- 10월, 200만 원 - 800만 원	8월 - 2년, 500만 원 - 1,000만 원
3	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	- 8월, 300만 원 - 600만 원	6월 - 2년, 500만 원 - 1,000만 원	1년 - 3년

- ▷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(제250조 제3항)는 2유형에, 방송·신문 등의 허위 논평·보도 등 금지 위반죄(제252조 제1항)는 3유형에 포섭
- ▷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(제252조 제2항)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기담 ●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●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●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●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●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●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●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(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) 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아자 ● 심신미약(본인책임 없음) ● 자수 ●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종 전과(벌금형 포함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소극 기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●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진지한 반성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● 자진 사퇴, 불출마 ● 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후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·비속, 선거관계인의 범행 ●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이중 누범 ●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

04¹ 선거운동기간 위반 · 부정선거운동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선거운동기간 위반	30만 원 - 90만 원	70만 원 - 150만 원	- 8월, 100만 원 - 300만 원
2	선거운동방법 위반	50만 원 - 90만 원	70만 원 - 200만 원	4월 - 1년, 100만 원 - 400만 원
3	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	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3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●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●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● 계획적·조직적 범행 ●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(3유형은 제외)(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) ●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아자 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● 자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종 전과(벌금형 포함)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소극 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●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진지한 반성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● 자진 사퇴, 불출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후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·비속, 선거관계인의 범행 ●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이중 누범

[유형의 정의]

01¹ 매수 및 이해유도

가. 제1유형(당내경선 관련 매수)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	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	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· 권유· 요구· 알선	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	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
나. 제2유형(일반 매수,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	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	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· 권유· 요구· 알선	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	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	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	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, 그 행위의 지시· 권유· 요구· 알선	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	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
일반인의 방송·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· 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· 권유· 요구· 약속	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	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


다. 제3유형(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, 그 행위의 지시·권유·요구·알선	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, 제3항	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·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	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	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
라. 제4유형(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, 후보자 매수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	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	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
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·권유·요구·알선	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	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
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	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	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
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·권유·요구·알선	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	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

마. 제5유형(당선인에 대한 매수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	공직선거법 제233조 제1항	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
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·권유·요구·알선	공직선거법 제233조 제2항	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

02¹ 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기부행위 금지·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	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	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기부행위의 지시·권유·요구·알선	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	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

03¹ 허위사실공표·후보자비방

가. 제1유형(후보자비방)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후보자비방	공직선거법 제251조	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

나. 제2유형(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	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	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당내경선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	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	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
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	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	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	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	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



다. 제3유형(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	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	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
방송·신문 등의 허위 논평·보도 등 금지 위반	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	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

04¹ 선거운동기간 위반·부정선거운동

가. 제1유형(선거운동기간 위반)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선거일 선거운동	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	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
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	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	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

나. 제2유형(선거운동방법 위반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	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	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
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	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	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

다. 제3유형(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·선거운동 금지 위반 행위	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	5년 이하 징역

[양형인자의 정의]

01 | 매수 및 이해유도

가.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

-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

-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
-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

-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,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선거인,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
 -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라.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

-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였는지를 불문하고, 실제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과 실비 수준의 소

액의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

- 다만, 선거운동원 등이 후보자로부터 선거인,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 행위나 기부행위 등을 위한 용도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※ “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
마.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

-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,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바. 계획적·조직적 범행

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사. 동종 전과(벌금형 포함)

- 공직선거법 위반, 정치자금법 제45조,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.

아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자.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

-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
-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차.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

-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02¹ 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**가.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·의례적 행위**

- 종전의 업무담당자나 주위의 다른 업무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부주의하게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
-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협찬 내지 찬조,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

-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

-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라.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

-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,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선거인,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
 -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마.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

-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,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바. 후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, 선거관계인의 범행

-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) 및 그 가족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회계책임자, 연설원의 범행인 경우

사. 동종 전과(벌금형 포함)

- 공직선거법 위반, 정치자금법 제45조,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.

아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자.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

- 제3자가 주도하는 모임 등에 우연히 참석하였다가 친분관계 등에 따른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차.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

-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카.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

-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

03¹ 허위사실공표 · 후보자비방

가.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

- 공표된 사실의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,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
-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기재 방법을 위반한 경우
- 적시된 사실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(제1유형은 제외)
- 토론회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정도의 해명이 이루어진 경우
- 단문 형식의 단순한 댓글이나 단순히 언론기사나 타인이 쓴 글을 인용하는 데 그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

- 선거일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소수의 유권자만을 상대로 한 경우
- 게시 기간이 극히 짧거나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

- 후보자의 불륜, 성매수, 부동산투기, 뇌물수수 등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
-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살포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되는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라.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

- 인터넷[페이스북(Facebook), 트위터(Twitter) 등 SNS(Social Network Service)를 포함], TV, 라디오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경우
- 다만, 인터넷의 경우 조회 수가 거의 없거나 게시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, 비공개 설정을 이용하는 등으로 게시자가 게시물의 전파가능 범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
 -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
 -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 등 악의적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바.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

- 지역사회에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
-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사. 처벌불원

-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, 피해자나 유족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)이 처벌불원의 법적·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,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.
-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,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, 내용,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,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.

아.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

-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(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/3 이상)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. 다만,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.

자.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

-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,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·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.

차. 동종 전과(벌금형 포함)

- 공직선거법 위반, 정치자금법 제45조,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.

카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04¹ 선거운동기간 위반·부정선거운동

가.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

-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극히 적은 경우
- 설치한 유사기관의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
- 탈법배부한 문서 등의 양이 극히 적은 경우
-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만을 상대로 한 범행인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

-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에 나아갔는데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
- 법령해석을 잘못된 결과 위법행위에 이른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

- 선거일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원래 선거운동기간 내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

라.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

- 교육적·종교적·직업적인 기관·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,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·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
- 통·리·반의 장, 주민자치위원회 위원,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국민운동단체의 임·직원 또는 대표자 등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
-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마. 동종 전과(벌금형 포함)

- 공직선거법 위반, 정치자금법 제45조,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.

바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

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01 |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 다만,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.
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02 |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[공통원칙]

01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02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03 |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[다수범죄 처리기준]

01 |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-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고하는 죄와 분리 선고하는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02 |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03 | 처리방법

-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II. 집행유예 기준

01¹ 매수 및 이해유도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● 지시·권유·요구·알선의 경우 ● 계획적·조직적 범행 ●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●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●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●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● 의사표시·약속·승낙에 그친 경우 ●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●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●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●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,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●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● 진지한 반성 ● 피고인이 고령 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

02¹ 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●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● 계획적·조직적 범행 ●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·의례적 행위 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기담 ●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●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● 의사표시·약속에 그친 경우 ●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●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●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●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●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● 진지한 반성 ● 피고인이 고령 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

03¹ 허위사실공표 · 후보자비방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●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●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●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●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●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●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● 자수 ●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●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●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●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(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● 진지한 반성 ● 피고인이 고령 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● 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



04¹ 선거운동기간 위반·부정선거운동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● 계획적·조직적 범행 ●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●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●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●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● 자수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●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●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●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● 진지한 반성 ● 피고인이 고령 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- 전과의 기간 계산
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.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